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55조에 따른 건양학원설치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해당하는 설치학교는 아래와 같다.

1. 건양대학교(부속병원포함)
2. 건양사이버대학교
3. 건양대학교병설 건양중학교
4. 건양대학교병설 건양고등학교

②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 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위원장 1인 포함 및 외부위원 1인 포함)으로 조직한다. (개정:16.08.30)

②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설치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당해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또한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16.08.30)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요구) ① 이사장은 그 소속 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 61조 제1항 및 관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파면, 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이사장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본 규정 제10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1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6.08.30)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양정하되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별표 1)
-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성폭력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행위, 성희롱 행위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16.08.30)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16.08.30)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임기 중 이사인 위원은 이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교원인 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정년까지로 한다.
-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16.08.30)

제 1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 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18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12.18.>

징계기준 (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과면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대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 조작하는 등 학교생활기과 관련한 비위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로. 특별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정직-감봉
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과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과면-해임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과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과면-해임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과면-해임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성매매	과면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과면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	과면	과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각한 신체적 폭력 사.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